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504(2종-암보장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504(2종-암보장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504(2종-암보장형)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504(2종-암보장형)의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 : 장애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 폭넓은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연간 100만 원 한도)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증여세 면제(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 원 한도) 등 폭넓은 세제혜택 부여
- 가입나이 확대 : 가입나이를 확대, 어린이와 고령자도 가입 가능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

여 등록한 상이자

- 청약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상이등급(1~7급)으로 확인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만기환급형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0년 만기	일시납	일시납
20년 만기	5년납, 10년납, 20년납	월납
80세 만기		

■ 가입나이

구분	보험기간		
	10년 만기	20년 만기	80세 만기
가입나이	0~49세	0~49세	0~70세

※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80세 만기 5년납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한도 : 500만 원 ~ 3,000만 원 (500만원 단위)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암진단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	500만 원
		보험계약 일로부터 1년 이상	1,000만 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	100만 원
		보험계약 일로부터 1년 이상	200만 원
만기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30%	

주) 1.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는 제외)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음

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4.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약관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 고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암 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사 망 시	○	○	○	
암 진 단 시	○	○	○	
해 약 시	○	○		
환급금대출시	○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보 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 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504(2종-암보장형)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20세	40세	60세
암발생률	남자	0.000322	0.002228	0.008792
	여자	0.000606	0.004986	0.007354
갑상선암발생률	남자	0.000076	0.000714	0.000511
	여자	0.000314	0.001893	0.001405
기타피부암발생률	남자	0.000007	0.000037	0.000149
	여자	0.000007	0.000029	0.000136
대장점막내암발생률	남자	0.000000	0.000007	0.000036
	여자	0.000000	0.000005	0.000016
제자리암발생률	남자	0.000007	0.000118	0.001041
	여자	0.000202	0.001397	0.001124
경계성종양발생률	남자	0.000023	0.000188	0.000530
	여자	0.000086	0.000306	0.000615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2504(2종-암보장형)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남자 40세, 80세 만기, 단위 : 원)

경과기간	일시납		20년납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2,059,100	2,002,300	138,000	39,200
3년	2,059,100	2,068,300	414,000	313,200
5년	2,059,100	2,135,000	690,000	596,300
7년	2,059,100	2,202,400	966,000	847,200
10년	2,059,100	2,297,400	1,380,000	1,234,800
15년	2,059,100	2,413,100	2,070,000	1,888,500
20년	2,059,100	2,449,700	2,760,000	2,543,500
40년	2,059,100	617,800	2,760,000	828,000